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9일

나. 제출자 : 신홍식 의원외 9인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1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(2012. 12. 1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본 폐지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가 2012년 7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통폐합하여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본 폐지조례안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

근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던 중 지난 7월 19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통폐합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를 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신홍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11월 9 일

발 의 자 : 신홍식의원 외 9 명

1. 제안이유

본 폐지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가 2012년 7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통폐합하여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